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045

제출연월일: 2024. 6. 2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과학관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,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관람료 및 이용료) ① (생	제10조(관람료 및 이용료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	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
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	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, 공	령으로 정하고, 공립과학관의
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	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
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	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	
체의 조례로 정한다.	